

파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2. 9.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토지·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배출시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수단이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규제수단이 미흡하여 쓰레기를 장기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봉투값을 아끼려고 적치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됨
- 또한,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 행위자를 적발하기 어렵고 시에서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무상 수거·처리하여 공터·미개발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따라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명령 대상 행위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청결유지 책무(안 제4조)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청결유지 및 대청소 실시 의무

나. 청결유지 조치(안 제4조의 2)

- 시장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명령 조치
-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 규정

다. 청결유지 이행(안 제4조의 3)

-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 명령규정

파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파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청결유지 이행)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4478
입안자	환경보호과장	박 철 순
	청 소 답 당	곽 기 용
	답 당 자	윤 희 기

신 · 구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청결유지등) ①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원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제도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할 요한 조 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구문대조표

원	행	개	정	안
<신설>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 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3(청결유지 이행)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파주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토지·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배출시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수단이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규제수단이 미흡하여 쓰레기를 장기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봉투값을 아끼려고 적치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됨.
- 또한,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 행위자를 적발하기 어렵고 시에서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무상 수거·처리하여 공터·미개발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따라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명령 대상 행위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청결유지 책무(안 제4조)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의 청결유지 및 대청소 실시 의무

나. 청결유지 조치(안 제4조의 2)

- 시장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명령 조치
-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 규정

다. 청결유지 이행(안 제4조의 3)

- 조치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 명령규정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가 토지·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관리, 규제수단은 있으나 「①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내에 방치하거나 ②관리가 소홀한 빈건물·공터등에 무단투기 된」쓰레기 처리에 대한 규제(통제)수단이 없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첫째, 시장이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감량·자원화 노력을 강구토록 계도하는 안 제4조(청결유지등)를 청결유지 책무로 책임성을 높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에게 토지·건물의 청결유지를 위해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 둘째, 청결유지조치(안 제4조의2)로 토지·건물이 불결한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1개월 범위내에서 필요조치를 시

장이 명하고 정황에 따라 1월 범위내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치명령 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국민의책무), 제7조(폐기물의 투기금지등)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조치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령적합성에 문제점이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6조 (국민의 책무)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물 투기금지등)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나. 내용타당성

- 동 개정조례안은 평소 관리가 소홀한 빈건물, 공터등에 투기되는 각종 쓰레기의 투기행위자 적발이 어렵고, 이렇게 방치되는 쓰레기는 시장이 무상수거 처리함으로써 이같은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실정에서 이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 특히, 시장의 대청소 실시 이행기간을 1월 범위로 하고 필요시 1월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등 내용의 타당성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그러나, 동 조례개정안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들에게 청결조치 명령을 하게 되어 있어 외곽지역의 산림속이나 논·밭·공터 등에 몰래버려 행위자를 적발치 못할 경우에는 청결조치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물·토지소유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 시행계획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